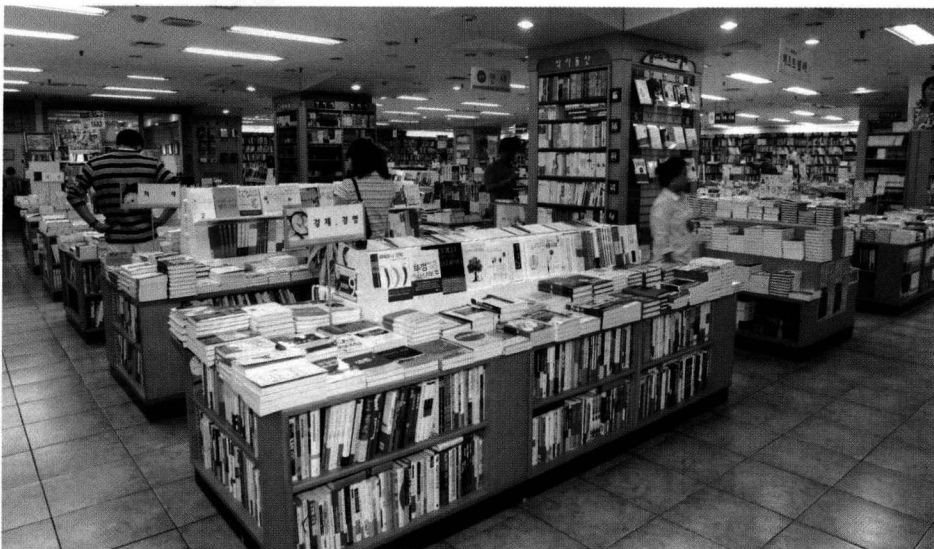


# 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온·오프라인 서점 구별 없이 10%, 18개월

글\_이주연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6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오프라인 서점의 10% 할인을 포함하고 있다.

‘도서정가제는 지켜져야 한다!’  
지난 6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결론이다. 그간 인터넷 서점의 할인 및 각종 경품 공세로 인해 도서정가제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고전을 면치 못한 출판계와 서점계는 이번 법률안 통과를 계기로 건전한 출판 유통 질서 확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5년 한시 조항인 도서정가제 시한을 삭제하여 도서정가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신간에 한하여 온·오프라인 서점 구별 없이 정가의 10% 이내에서 할인 판매가 가능하게 한 것과 신간의 기준을 발행일로부터 18개월로 연장한 것 등이다. 또한 그동안 출판과 인쇄를 한데 묶어 ‘출판및인쇄진흥법’으로 되어 있던 명칭을

‘출판문화산업진흥법’과 ‘인쇄문화산업진흥법’으로 분리하게 되었다.

문화관광위원회는 지난 4월 심사 보고를 통해 이 개정안 제안의 이유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는 다양한 양질의 도서가 국민에게 보다 저렴하고 원활히 공급되는 기반 위에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이번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문광위 의원 전원이 합의를으로써 도서정가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공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도서정가제’는 인터넷 서점의 할인과 경품 등으로 인해 사실상 거의 무너져 있는 상태였다. 출판계는 마진을 낮춰서라도 인터넷 서점이 원하는 가격에 책을 납품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았고, 서점계는 동네 서점은 물론 웬만한 중형 서점들도 인터넷 서점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출판계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였던 것이다.

개정안의 통과로 출판계 안팎이 낙관적 분위기로 고무된 가운데 그간 도서정가제가 자유시장의 원리와 소비자 권익 보호에 위배된다는 취지 하에 지속적으로 반대의를 밝혀왔던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의견 조율을 걱정하는 이들도 많다.

또한 마케팅으로 승부하는 최근의 출판계 현실로 따진다면 책에 표기된 가격대로 받는 완전 정가제가 아니라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결국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의 과열 경쟁만 부추기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 의견도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기획홍보부 장영태 차장은 “출판 관련 단체와 서점계는 이 법의 추진에 따른 시행령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공정위와의 협의를 통해 세부적 사항에 대한 출판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지만 소비자들이 걱정하는 ‘마일리지’ 같은 민감한 문제는 서로 어느 정도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어차피 주사위는 던져졌다. 중요한 것은 출판계와 서점계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얼마나 적극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합리적인 유통 질서를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출판계, 서점계, 독자 모두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모두를 ‘납득’시킬 수 있는 시행령이 나와야 할 것이다. **한민**